

2024) 10개년 건축기사 과년도 문제해설 2차 정오표 [2024.5.20]

■ 2권

■ 과년도기출문제 2022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48	2022년 2회 82번 정답 수정	83. ④	82. ④
49	2022년 2회 88번 해설 수정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과년도기출문제 2020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50	2020년 2회 91번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r> <td>①</td> <td>식물원</td> <td>문화 및 집회시설</td> </tr> <tr> <td>②</td> <td>동물병원</td> <td>제2종 근린생활시설</td> </tr> <tr> <td>④</td> <td>장례식장</td> <td>장례시설</td> </tr> </table>	①	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동물병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④	장례식장	장례시설	
	①	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동물병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④	장례식장	장례시설										
	정답 수정	91. ②	91. ③									
65	2020년 4회 41번 해설 수정	$\rho_{\max} = 0.726\rho_b = 0.714(0.039) = 0.02831$	$\rho_{\max} = 0.726\rho_b = 0.726(0.039) = 0.02831$									
73	2020년 4회 79번 해설 수정	② <u>저수조가 없으므로</u> 단수 시에 급수할 수 없다.	② <u>저수조가 없으므로(삭제)</u> 단수 시에 급수할 수 있다.									

2024) 10개년 건축기사 과년도 문제해설 1차 정오표 [2024.5.8]

■ 1권

- 파이널 핵심정리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13	③ 항 (2) 표 내용 수정	7층 이상의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이사집 등을 운반할 수 있도록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화물용승강기(적재하중 0.9ton 이상,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은 1.35m 이상, 다른 한 변은 1.6m 이상)를 설치한다.	10층 이상의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이사집 등을 운반할 수 있도록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화물용승강기(적재하중 0.9ton 이상,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은 1.35m 이상, 다른 한 변은 1.6m 이상)를 설치한다.

■ 과년도기출문제 2023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22	2023년 1회 81번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th> </tr>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td> <td>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10m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td> <td>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td> </tr> <tr> <td colspan="4">【예외】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td> </tr> </tbody> </table>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예외】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예외】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27	2023년 1회 100번 정답 수정	100. ①	100. ④																			
77	2023년 4회 94번 정답 수정	94. ③	94. ①																			

■ 과년도기출문제 2021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26	2021년 1회 97번 문제 수정	<p>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높이 <b>10미터</b>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 ) 이상</li> <li>2. 높이 <b>10미터</b>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 ⊖ ) 이상</li> </ol>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b>10m</b>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td> <td>높이 <b>10m</b>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r> <td>일반 주거지역</td> <td colspan="3"> <b>【예외】</b>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b>10m</b>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b>10m</b>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일반 주거지역	<b>【예외】</b>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b>10m</b>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b>10m</b>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일반 주거지역	<b>【예외】</b>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 과년도기출문제 2019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25	2019년 1회 96번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b>10m</b>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td> <td>높이 <b>10m</b>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r> <td>일반 주거지역</td> <td colspan="3"> <b>【예외】</b>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b>10m</b>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b>10m</b>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일반 주거지역	<b>【예외】</b>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b>10m</b>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b>10m</b>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일반 주거지역	<b>【예외】</b>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 과년도기출문제 2017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49	2017년 2회 88번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 rowspan="2">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10m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78	2017년 4회 97번 해설 수정	<p>【예외】</p> <p>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p>											

■ 과년도기출문제 2016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26	2016년 1회 85번 문제 수정	<p>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 ) 이상</p> <p>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 ⊚ ) 이상</p>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 rowspan="2">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10m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body> </table> <p>【예외】</p> <p>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p>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75	2016년 4회 85번 문제 수정	85.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85.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가?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 rowspan="2">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10m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r> <td colspan="4">【예외】</td> </tr> <tr> <td>일반 주거지역</td> <td colspan="3">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 과년도기출문제 2015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26	2015년 1회 99번 문제 수정	99.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높이 9m 이하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야 하는가?	99.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높이 10m 이하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띄어야 하는가?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 rowspan="2">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10m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r> <td colspan="4">【예외】</td> </tr> <tr> <td>일반 주거지역</td> <td colspan="3">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75	2015년 4회 89번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 rowspan="2">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10m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r> <td colspan="4">【예외】</td> </tr> <tr> <td>일반 주거지역</td> <td colspan="3">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 과년도기출문제 2014년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51	2014년 2회 96번 해설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적용기준</th> <th colspan="2">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전용 주거지역 및</td> <td rowspan="2">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td> <td>높이 10m 이하인 부분</td> <td>1.5m 이상</td> </tr> <tr> <td>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td> <td>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td> </tr> <tr> <td colspan="4">【예외】</td> </tr> <tr> <td>일반 주거지역</td> <td colspan="3">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td> </tr> </tbody> </table>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대상	적용기준	이격거리의 기준(조례로 정함)																			
전용 주거지역 및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높이 10m 이하인 부분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1/2 이상																		
【예외】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																				
	2014년 4회 17번 해설 수정	17. <u>7층</u>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물류용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u>10층</u>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물류용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	해설 수정	<p>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p> <p><u>10층</u>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사집 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물류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적재하중이 0.9ton 이상일 것</p> <p>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은 1.35m 이상, 다른 한 변은 1.6m 이상일 것</p> <p>④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p> <p>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p>																			